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6. 3 선고 2020가단13022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영진, 담당변호사 홍경원

피고광주시

소송대리인 B

변론 종결2021. 4. 29.

판결 선고2021. 6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
가. 27,192,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4. 27.부터 2021. 6. 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
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나. 2021. 3. 30.부터 광주시 C 도로 340m²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406,300원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선정당사자)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5%는 원고(선정당사자)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(이하 '선정자'라 한다)들에게, ①

27,234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1)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② 2021. 3. 30.부터 광주시 C 도로 340m²2)에 대한 도로 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금 406,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(선정당사자)는 경기 광주군 D 전 806평(이하 '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사정명의인 E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에서 분할, 지목변경, 면적단위 환산 등의 과정을 거쳐 분할된 광주시 C 도로 340m²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1996. 3. 14.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.

나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은 위 E의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정하고, 2019. 12. 18.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.

다. 원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의 지목은 '전'이었는데, 1953. 3. 20.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'도로'로 기재되어 있고, 1954. 3. 22. 작성된 복구측량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'도로'로 되어 있다.

라. 이 사건 부동산은 1938. 12. 1. 지방도 F으로 경기 광주군과 수원군을 연결하는 도로 부지로 최초 편입되었는데, 그 후 1981. 3. 14.부터 국도 G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다가 2002. 1. 10. 국도 지정이 폐지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시도 H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.

[인정근거] 일부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, 10 내지 1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)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·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배타적 사용·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의 선대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,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2)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,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通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·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의 여부는,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,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,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,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,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,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,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6다34206 판결, 대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의 선대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타적 사용·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으므로,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

가.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 기준

1)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의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

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,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다57138 판결 등 참조).

2)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그 지목이 '전'이었고, 이 사건 부동산은 1938. 12. 1. 지방도 F으로 경기 광주군과 수원군을 연결하는 도로 부지로서 최초로 도로에 편입되었는바, 이러한 사정에 위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위치, 면적, 현황 및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위치,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부동산은 '전'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'도로'로 편입되면서 '도로'로서 점유·관리되기 시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(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이 '도로'임을 전제로 임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)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'전'인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
나. 부당이득의 액수

1)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2015. 7. 30.부터 2019. 9. 12.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의 해당 기간임료(이하 원단위 미만은 버린다)란 기재와 같고, 2019. 9. 12. 이후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연간임료는 4,875,600원, 월임료는 406,300원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.

2015. 7. 30.~ 2015. 9. 12.	4,494,800	554,1533) 연간임료 4,494,800원 × 45일(2015. 7. 30. ~ 2015. 9. 12.) ÷ 365일	374,567
2015. 9. 13.~ 2016. 9. 12.	4,664,800	4,664,800	388,733
2016. 9. 13.~ 2017. 9. 12.	4,776,800	4,776,800	397,233
2017. 9. 13.~ 2018. 9. 12.	4,800,800	4,800,800	400,067
2018. 9. 13.~ 2019. 9. 12.	4,875,600	4,875,600	406,300
2019. 9. 13.~ 2020. 9. 12.	4,875,600	4,875,600	406,300
2020. 9. 13.~ 2021. 3. 29.	4,875,600	2,644,8464) 연간임료 4,875,600원 × 198일(2020. 9. 13. ~ 2021. 3. 29.) ÷ 365일	406,300
합계		27,192,599	

따라서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원고(선정당사자)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2015. 7. 30.부터 2021. 3. 29.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7,192,599원, ② 그 다음날인 2021. 3. 30.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406,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(피고가 반환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므로,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분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한편 원고(선정당사자)는 위 ①의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위 ①의 돈은 위에서 본대로 2021. 3. 29.까지의 부당이득금이고, 부당이득금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, 피고는 위 ①의 돈에 대하여 2021. 3. 29. 이후로서 원고(선정당사자)가 그 이행을 최고한 날 다음날인 이 사건 2021. 4. 23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위 ①의 돈에 대한 위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소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① 27,192,5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. 4. 23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21. 4. 27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. 6. 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② 2021. 3. 30.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406,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이지혜

별지

1) 2021. 4. 23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의 변경된 청구취지에는 이 부분 지연손해금에

대한 기산일이 누락되어 있다.

2) 2021. 4. 23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는 '광주시 C 도로 522㎡'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비추어 '광주시 C 도로 340㎡' 오키임이 분명한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.

3) 연간임료 4,494,800원 × 45일(2015. 7. 30. ~ 2015. 9. 12.) ÷ 365일

4) 연간임료 4,875,600원 × 198일(2020. 9. 13. ~ 2021. 3. 29.) ÷ 365일